교직원 인사 규정 운영 내규

제정 1996. 1. 17. 제20차 개정 2024. 4. 15.

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임용권자)** 직원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 호봉 승급과 전보는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제2장 직원 인사위원회

- 제3조(인사위원회 설치)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- 제4조(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행정지원처장(위원장)을 제외한 학교측 대표 5인 (개정 2021.12.13)
 - 2.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하는 대표 5인
 - 3. 삭제 (2002.7.4)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9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2.3.22)
- 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6.08.10, 2017.04.04)
- 제7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- 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인사담당 직원으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**제9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 중 보직자의 경우임기를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- **제10조(준용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임용

- **제11조(임용)** ① 신규임용·승진·전직·전보 등은 공개채용,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.
 - ② 직원의 신규임용과 승진의 경우에는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 및 견책의 경우에는 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③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그러나, 기술직원과 기능직원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·면허증 기타 임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는 공개채용 시

가산점을 줄 수 있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.
- 1. 학원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개정 2015.06.08)
- 2. 전문분야의 자격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(개정 2015.06.08)
- 3. (신설 2015.06.08) (삭제 2017.04.04)

제12조(임용제한) 삭제 (2014.5.12)

- **제13조(임시임용)** ① 긴급 또는 시한부 직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한도내에서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채용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임시직원은 사무직원 임용자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.

제13조의2(계약임용) 특정한 직종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신규임용자의 보직) 신규임용자의 최초 보직은 해당직종의 하위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제11조 4항이 정한 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수습기간) ① 직원을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.

- ② 신규로 임용된 직원은 수습기간동안 수습직원으로 발령한다.
- ③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수습기간 중 1회의 평가를 실시하고, 근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2.01)
- ④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의 10분의 8을 지급한다.
- **제16조(우선채용)** ① 상병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직원이 퇴직후 1년이내에 건강을 회복하고 재임용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.
 - ② 전 항의 퇴직자가 1년이내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회복될 가망이 없어 대신 부양가족 (직계비속)의 채용을 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격이 임용요건에 합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대신 취업의 의사는 퇴직 후 1년이내에 유효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제17조(임용절차) ① 직원의 임용은 임명장의 교부로 행한다.

- ② 신규임용은 신원보증서의 제출과 신원조회를 종료한 후에 행한다.
- ③ 직원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력서 3통 (개정 2014.5.12)
- 2. 인사기록카드(소정용지) 2매
- 3. 명함판 사진 4매, 증명 사진 2매
- 4. 최종학교 졸업, 성적 증명서 각 2통
- 5. 경력증명서(재직기관별) 각 2통
- 6. 가족관계증명서 5통 (개정 2023.12.01)
- 7. 서약서(소정용지) 2통
- 8. 신원보증서(소정약식, 보증인 2인이상) 각 2부
- 9. 민간인 신원진술서(소정용지) 5부
- 10. 주민등록 등, 초본 각 4부
- 11. 각종 기술면허증 또는 자격증(해당자) 2부
- 12. 건강진단서(종합병원) 2부

제18조(호봉사정) 직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확정한다.

제4장 승진 · 승급

제19조(승진)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직열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중에서 임용하며, 본 법인의 근속경력, 근무평정, 업무능력 등을 참조하고 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.

- **제20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**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 부서의 장이 제시한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기록 카드에 의한 경력평정 등의 평점에 의거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 70점, 경력평정 10점, 교육훈련결과 10점, 부서평가평정 5점, 업무실적평가 5점으로 한다. (개정 2008.2.26, 2012.3.22., 2012.8.9., 2019.07.11)
 -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학기를 포함한 최근 4학년도의 최종개인평가 점수에 대하여 직전학년도: 전년도1: 전년도2: 전년도3을 30%:30%:20%:20%의 비율로 반영한다. (개정 2005 3 1)
 - ③ 근무성적평정점의 신규적용대상 또는 승진소요년수에 따라 반영할 최종 개인평가점수 4학년 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상학년도의 최종 개인평가 점수를 균등비율로 반영한다.
 - ④ 경력평정점의 경우 매 학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1의 경력평정기준표에 따라 배점한다. (개정 2020.07.30)
 - ⑤ 직원교육훈련결과의 평정점은 전학년도 교육훈련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3의 직원교육훈련평정점수표에 따라 배점한다. (신설 2008.2.26)
 - ⑥ 부서평가평정, 업무실적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하여야 한다. (개정, 각호 신설 2012.3.22, 2012.8.9)
 - 1. 부서평가 평정은 평가관련 부서의 최종 평가결과를 적용하되, 평정점은 부서 평가 정착단계 까지 매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.
 - 2. 업무실적평가는 4·5급 승진후보자는 필요시 개별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고, 3급 이상과 6급 이 하 승진후보자 평정은 근무실적 서류 평가로 하되, 인사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. (개정 2019.07.11.)
 - 3. 인사위원회의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고와 최저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한다. (개정 2019.07.11.)
 - 4. 위 각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
 - ⑦ 직원의 승진은 매년 9월 1일에 실시한다.
- 제21조(선임권) 직원의 승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.
 - 1. 근무성적 평점이 우수한 자
 - 2. 당해 직종에서 장기 근무한 자
 - 3.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
- **제22조(특별승진 및 특별승급)**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순직 하였을 때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.
- 제23조(승진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.
 - 1. 징계처분 및 휴직중인 자
 -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가. 정직의 경우 18개월
 - 나. 감봉의 경우 12개월
 - 다. 견책의 경우 6개월
- **제24조(승급)**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종내의 하위 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승급함을 말하며, 매년 해당 승급월 1일자 정기승급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2.3.22)

제5장 근무성적 평정

- **제25조(목적)** 직원의 능력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은 직원의 근무실적, 업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.
- 제26조(평정대상) 평정은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대

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신규채용되어 평정 기준이 현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의 직원
- 2. 휴직, 피교육(해외여행 포함),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. 다만, 근무에 복귀한 후 3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평정하여야 한다.
- 3. 퇴직 수속 중에 있는 직원
- 4. 삭제 (2014.5.12)
- 5.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
- 6. 삭제 (2014.5.12, 개정 2007.4.25)
- **제27조(평정원칙)** ①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공정성,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③ 인사담당부서 부장 또는 인사담당자는 평정 직전에 평정자와 피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절차, 평정내용 및 평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2.3.22)
- 제28조(평정점의 기준 및 방법) ① 평정점수는 제1차 및 제2차 평정점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점을 60점, 제2차 평정점을 40점으로 환산하며, 제1차 및 제2차 평정의 평정요소 및 항목별 점수배정은 직위 및 직종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(<u>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</u>지 제4호 서식)에 의한다.
 - ②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, 객관성,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이상의 경우에는 자기기술서(별지 제5호 서식) 및 자기평정표(별지 제6호 서식)를 과장 이하의 경우에는 자기기술서, 자기평정표 및 동료평정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·활용하여야 한다. 단, 자기기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3.22)
 - ③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자기기술서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평정표 및 동료평정표는 인사부서에서 취합·정리하여 제1차 및 제2차 평정점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다.
- **제29조(평정시기)** 평정시기는 매학년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평정한다. (개정 2007.4.25)
- **제30조(평정자)** ① 부장이상 직원의 경우 제1차 평정은 부서장이 제2차 평정은 부총장이 담당하고, 과장이하 직원의 경우 제1차 평정은 소속 부(팀)장이 제2차 평정은 부서의 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2.3.22)
 - ② 직제상 제1차 및 제2차 평정자가 모두 없거나 평정자 한쪽이 없을 경우 총장이 판단하여 평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.
 - ③ 직무대리는 본인 직급에서 평정대상자가 되고 부(팀)장 직무대리는 1차 평정자가 된다. (개정 2012.3.22)
 - ④ 피평정자가 전보되어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.
- **제31조(가점 및 감점)** ① 평정기간 중의 상벌, 근태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근무성적 평정 가감점 점수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하되 가점 또는 감점의 평점은 5점을 상 (하)한선으로 한다.
 - ② 가점평정은 교외기관의 표창, 포상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표창, 포상의 사유에 비추어 공적 또는 선행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 - ③ 가점 및 감점 평정을 위하여 총무부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외에 수시로 확인, 점검하여 이를 근거로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2.3.22)
- 제32조(조정 개인평가점수의 산출) 인사담당부서 부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평균평가점수 및 전체 평균을 계산 후 다음의 방식에 따라 조정개인평가점수를 산출한다. (개정 2012.3.22)
 - 조정개인평가점수=개인평가점(제1차 평정점의 60점 환산 및 제2차 평정점의 40점 환산점수의 합계)×직원 전체 평균점수÷평가자 평가부서별 평균점수
- 제33조(부하평정의 실시) 부(팀)장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

부(팀, 센터)원에 의한 부하평정을 실시한다. (개정2014.5.12., 개정 2012. 3.22)

- 제34조(최종 개인평가점수의 산출) 인사담당부서 부장은 제32조의 조정개인평가 점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 개인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3.22)
 - 1. 부장이상 직원의 경우: 조정 개인평가점수90점 환산점수+부하평정표 평점의 평균점을 5 점으로 확산한 점수+가·감점 (개정 2012.3.22)
 - 2. 과장이하 직원의 경우: 조정 개인평가점수의 95점 환산점수+가·감점 (개정 2012.3.22)
- **제35조(평정의 비공개 및 이의신청)** ①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,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담당부서의 <mark>장은</mark>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의 최종 개인평가점수를 열 람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최종 개인평가점수 열람 후 평가 점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인사담 당부서에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은 평정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며, 평정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에 대한 최종 개인평가점수를 유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.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직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
[제목개정 2024.4.15.]

[전문개정 2024.4.15.]

제36조(교육훈련) 총장은 직원에게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 및 교양과 관련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기타 교육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6장 근무성적평정조정소위원회

- **제37조(근무성적평정조정소위원회 설치)**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 인사위원회 내에 근무성적평정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**제38조(구성)** 소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업무 전공교원 및 인사부서 직원 등 4명이내로 구성하고 직원 위원은 보직기간으로,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39조(기능)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평정자의 제1차 및 제2차 평정점과 자기기술서, 자기평정표 및 동료평정표 등의 과도한 편 차에 대한 조사·분석
 - 2. 위 호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재 평정 요구 및 개선방안 심의

제7장 신분의 보장

- **제40조(명예퇴직)** ① 직원으로서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전 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, 범위, 지급액, 절차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**제41조(준용규정)** 이 내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 제규정 및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, 노 사협약 등을 준용한다.

부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. 1. 17.부터 시행한다.
- (2) 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 제규정 및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, 노사협약을 준용한다

부칙

이 내규는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0조의 일반직원 평정위원 평정 10점에 관한사항은 2011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한다.

〈경과규정〉

- ① 2004학년도 이전 근무성적평정점은 전반기 및 후반기 평점의 평균을 한학년도 평정점으로 처리한다.
- ② 2004학년도 후반기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은 2004.7.1부터 2005.2.28까지로 한다.
- ③ 2007년도 근무평정시기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064, 2012.8.9)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0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347, 2014.5.12)

이 내규는 2014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356, 2015.06.08)

이 내규는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628, 2016.08.10)

이 내규는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40, 2017.04.05)

이 내규는 2017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64, 2019.07.11)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0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은 2019학년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85, 2020.07.30)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0조 제4항(경력평정기준표)은 2020년 09월 01일자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660, 2021.12.13)

이 내규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지원팀-3572, 2023.11.14)

이 내규는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지원팀-1365, 2024.04.15)

이 내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(개정 2012.08.09, 2020.07.30)

경력평정기준표

* 사무직, 기술직, 별정직

배점	3급(3년)	4급(4년)	5급(5년)	6급(4년)	7급(3년)	8급(3년)	9급(2년)
8.0	3년 이상 -	4년 이상 -	5년 이상 -	4년 이상 -	3년 이상 -	3년 이상 -	2년 이상 -
	4년 미만	5년 미만	6년 미만	5년 미만	4년 미만	4년 미만	3년 미만
8.5	4년 이상 -	5년 이상 -	6년 이상 -	5년 이상 -	4년 이상 -	4년 이상 -	3년 이상 -
	5년 미만	6년 미만	7년 미만	6년 미만	5년 미만	5년 미만	4년 미만
9.0	5년 이상 -	6년 이상 -	7년 이상 -	6년 이상 -	5년 이상 -	5년 이상 -	4년 이상 -
	6년 미만	7년 미만	8년 미만	7년 미만	6년 미만	6년 미만	5년 미만
9.5	6년 이상 -	7년 이상 -	8년 이상 -	7년 이상 -	6년 이상 -	6년 이상 -	5년 이상 -
	7년 미만	8년 미만	9년 미만	8년 미만	7년 미만	7년 미만	6년 미만
10.0	7년이상	8년 이상	9년 이상	8년 이상	7년 이상	7년이상	6년 이상

〈별지〉(신설 2024.4.15.)

근무성적 평정 이의 신청 및 결정서

소속			직위			성명		
이의신청 내용								
				신청자	성명 :		월	일 (인)
1차 평정자 의견	□ 이상 없 □ 점수 조 사유 :		점수 유지 -)			
2차 평정자 의견	□ 이상 없 □ 점수 조 사유 :		점수 유지 -)			
결정내용								
1차 평정자 성명:			(인)	2차 평정	자 성명	اق د	일	일 (인)